

제3장 경비의 산정

1. 경비의 구성

- 1) 경비는 제품(공사)의 제조(시공)를 위하여 소비(소요)된 제조(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 2) 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제조(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원가계산자료,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예정하여야 한다.
- 3)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시공)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반재료) 또는 완제품(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 (3) 감가상각비는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 (4) 기계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 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 (5) 수리수선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등 운반구, 내구성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당해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 (6) 특허권사용료는 제조의 경우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로서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료이며, 공사의 경우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 (7) 기술료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시공)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비) 및 동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 (8) 연구개발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사용비례)에 비례(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생산(시공)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 (9) 품질관리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을 제외한다.
 - (10)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소, 화장실등 동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11) 시험검사비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자체시험검사비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다.
 - (12) 지급임차료는 제조의 경우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등의 사용료로서 당해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하며, 공사의 경우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 (13)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

형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공사손해보험료는 제20조의 2에서 정한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한다.

- (14)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현장사무소 직원 등의 의료 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 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이하 같다)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 (15)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 (16)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18)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9)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 (20) 세금과공과는 공장이 당해 제조와 또는 시공현장에서 당해공사와 직접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21)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22)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공사의 경우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 등을 말한다.
- (23) 지급수수료는 제조의 경우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하고 공사의 경우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어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 (24)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 (25) 보상비는 당해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당해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 (26)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27)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 (28)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참고】 경비 비목별 적용 업종구분(예정가격작성기준)

비 목	적용업종		비 목	적용업종	
	제조	공사		제조	공사
전력비·수도광열비	○	○	보관비	○	○
운반비	○	○	외주가공비	○	○
감가상각비	○	X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기계경비	X	○	소모품비	○	○

수리수선비	○	X	여비·교통비·통신비	○	○
특허권사용료	○	○	세금과공과	○	○
기술료	○	○	폐기물처리비	○	○
연구개발비	○	○	도서인쇄비	○	○
품질관리비	X	○	지급수수료	○	○
가설비	X	○	환경보전비	X	○
시험검사비	○	X	보상비	X	○
지급임차료	○	○	기타법정경비	○	○
보험료	○	○	안전관리비	X	○
복리후생비	○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X	○

2. 경비의 계산

1) 계산방법에 의한 분류

경비는 그 발생형태와 계산방법에 따라 직접계산방법과 배부계산방법으로 구분되는데 그 세부 비목은 원가계산 실무상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다음】

- 직접계산방법에 의한 비목의 분류

운반비, 감가상각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외주가공비, 기계경비, 품질관리비, 지급임차료(특히 기계류 임차 시) 등

- 배부계산방법에 의한 비목의 분류

전력비, 수도광열비, 수리수선비, 가설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등

위와 같은 구분에서 직접경비로써의 성격이 짙은 비목이라 하더라도 원가계산 실무상 간접경비로 구분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먼저 당해 비목에 대하여 비용의 발생형태와 함께 당해 제품이나 또는 시공물의 특성을 비롯하여 그 생산형태, 공통성, 비례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를 직접경비와 간접경비 중 어느쪽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직접계산

직접경비는 계약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경비를 말한다. 특히 이 직접경비는 당해 제품이나 또는 시공물의 수량에 정비례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제품단위별로 직접부과하여 계산하기가 용이하다. 즉 직접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먼저 경비의 발생기간, 계약내용 및 지급 실적 등에 관한 자료나 증빙서류를 근거로 그 내용을 검토하여 그 소요(또는 소비)액을 파악한 다음 이를 당해 기간의 총생산량으로 제하여 단위당 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당해 계약목적물의 수량으로 승하여 소정경비를 산출한다. 이를 보다 알기쉽게 공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산식】

$$\text{직접경비} = (\text{소요 또는 소비액} \div \text{총생산량} = \text{단위당 가격}) \times \text{당해계약목적물의 수량}$$

(1) 운반비

운반비란 재료비 계상에 포함되지 않는 재료구입을 위한 외부 부대비로서의 운반비용과 완제품을 계약목적지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재료비에 포함되는 운반비는 재료구입과 관련된 부대비용 즉, 거래운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이며 재료 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다.

통상 최종제품의 납품운반비가 경비비목상의 운반비로 계상되고 있으나, 이는 회계이론상 제조완료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제조원가가 아닌 손익계산서상의 일반관리비에 계상되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예정가격의 결정에 개별 제품의 운반비가 직접, 개별 계산되지 않으므로 이를 직접경비인 운반비로 계상, 산정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사용재료의 가격을 결정할 때, 구입가격과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와 부대비용을 각각 당해 비용과목에 분류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자사 운반차로 운반하는 경우

연료비, 운전, 운송인의 여비, 차량상각비, 차량세 등 제조원가의 당해 비용과목에 계상한다.

② 운송회사에서 운반하는 경우

지불 경비로서 제조원가의 운반비 과목에 계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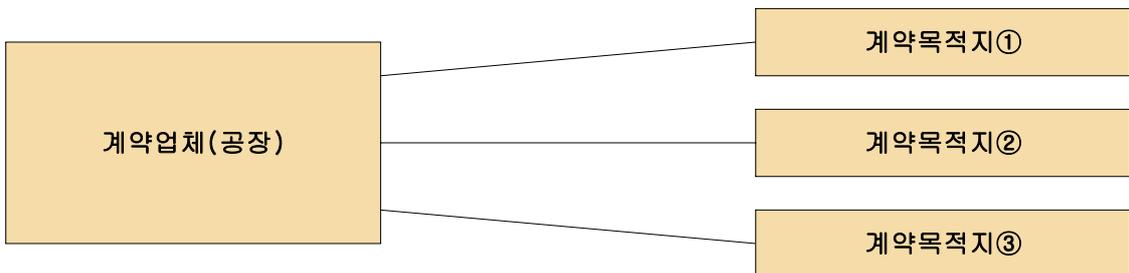
운반비는 운반수단(자동차, 기차 등)에 따라 상이한 바 제조공장과 계약목적지간의 거리, 중량(또는 용적톤)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운임인 경우에는 과거실적 운반요율 또는 과거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물자 과거실적 운반요율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적용하며, 철도화물운임인 경우에는 철도화물요율등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그 계산된 금액에 하역료/상하차비/조작비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또한, 계약목적지가 다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조공장과 계약목적지간의 거리에 계약목적지별 운반물량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산식】

$$\text{운반비} = \text{거리} \times \text{중량} \times \text{운반요율}$$

【그림】 계약목적지가 다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의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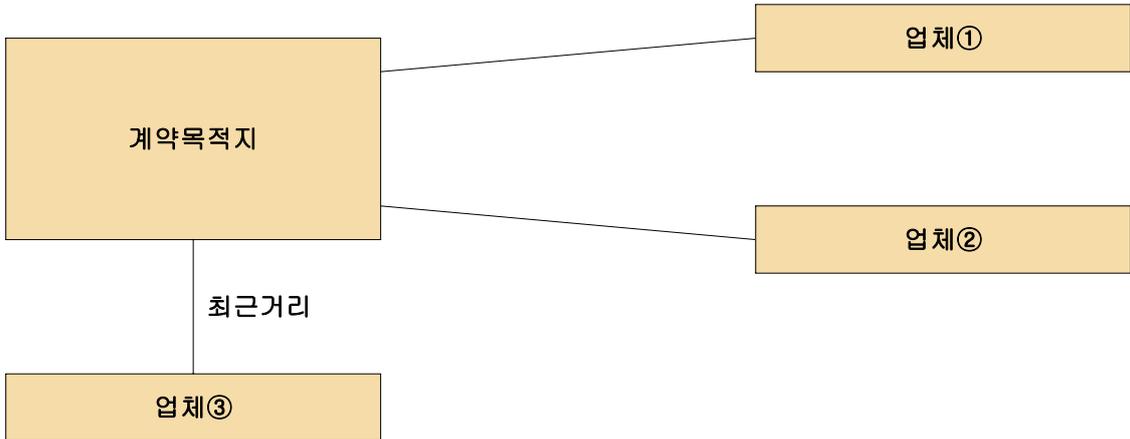


$$\text{운반비} = \frac{\text{계약목적지①} + \text{계약목적지②} + \text{계약목적지③}}{\text{총 물량}}$$

일반경쟁계약 대상물품에 대한 운반비 계산의 경우에는 계약목적지에서 최근거리에 위치한 생산가능업체를 기준으로 계산항을 원칙으로 한다. 즉, 운반비 계산에 있어 계약목적지가 1곳

인 경우에는 계약목적지를 기점으로 최근거리 업체를 기준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그림】 최근거리에 위치한 생산가능업체의 경우



(2)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는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의 상각액을 말한다.
- “감가상각비”는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참고】 법인세법 시행령 발췌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5.6.30., 2010.6.8., 2010.12.30., 2012.2.2.>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건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다. 선박 및 항공기
 - 라. 기계 및 장치
 - 마. 동물 및 식물
 -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축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 라. 담사용권
 - 마. 삭제 <2002.12.30.>
 - 바. 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

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②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이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2.2.2.>

1.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라 한다)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고정자산
2.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④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법인이 해당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개정 2010.12.30.>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9., 2010.12.30.>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리스의 자산을 양수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3) 특허권 사용료

일반적으로 타인이 소유하는 특허권을 사용할 때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임차료는 소유자와 사용자간의 협의된 계약에 의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통례이며,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는 일정한 계약기간에 따라 법률상 보호를 받는 기간동안 특허료의 지급을 받는다. 이 때,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계약조건이나 계약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급대상상에서 금액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특허권사용료”는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제조과정에서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특허권 사용 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료를 말한다.
- “특허권사용료”는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한 생산계약량으로 나누어 계산하거나 또는 특허 사용기간 및 생산능력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특허권 계약내용에 사용료가 생산수량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직접경비로 처리하고, 계약상 특허권 사용료의 지급이 연액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원할 계산한다.

(4) 기술료

노우-하우비(Know-how)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으로부터 공업소유권이나 기타기술을 양수받고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 것으로 통상 계약기간이 1년이상으로서 단순하지 않은 기술과 그 기술의 사용에 직접 필요한 용역의 도입을 말한다.

기술료는 신제품, 신기술의 개발, 신기술의 도입, 설비의 개량 등 일반적으로 기초적 연구를 하기 위한 설계, 시험, 연구활동에 따라 생기는 원가로서,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범위 즉, 기술개발비, 도입 기술의 소화개발비, 기술정보비, 기술훈련비, 연구시설

비 등의 계산을 말한다.

- “기술료”는 당해 계약목적물 제조(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Know-how획득비 및 동 부대 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 “기술료”는 세법(법인세법상의 개발비)에서 정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이연 상각하되 생산 능력으로 나누어 계산하거나 또는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부 계산한다.

기술료의 상각은 세법에서 정한 법인세법상의 개발비에 따라 정하는데 이에 대해 법인세법에서는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무신고시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 상각)에 따라 매사업년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기술료 원시자료 검토방법

구 분	검 토 사 항	검 토 자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기술료지급 실적 ○ 관련근거서류정밀 검토 · 기술료 도입내역(조건기간) · 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료 산정 적정성 검토 ○ 동일제품 타기관매출실적 여부 검토 ○ 장기물량 통보내역 검토 ○ 불평등 계약조건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도입허가서 ○ 계약서 ○ 지급청구서 ○ 송금내역서 ○ 기술료지급대장 ○ 공인회계사 확인서

(5)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는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상 개발비(기업회계기준 대부분 준용)의 자산계상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가계산에서 연구개발비의 직접비로서의 인정은 규정과 같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필요한 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연구개발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한다.

- “연구개발비”는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이연상각하되 생산능력으로 나누어 계산하거나 또는 그 생산수량(사용)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 생산(시공)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 할 수 있다.

원가계산상의 연구개발비는 기술개발 및 연구비, 기술개발용역비, 기술개발촉진비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준칙상의 연구개발비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의 개발비 규정이 참고가 될 수 있겠는데 법인세법상의 개발비는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할 것으로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6조)

【참고】 연구개발비 원시자료 검토방법

구 분	검 토 사 항	검 토 자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기술개발비 발생내역 ○ 발생내역/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근거/타당성검토 ○ 산정기준 적정성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대장 ○ 품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전담여부검토 ○ 회계처리기준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도 ○ 회계처리대장
--	--	---

(6) 시험검사비

시험검사비는 완제품의 성능 또는 기능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 받기 위해서 외부기관(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할 때의 소요비용을 말한다. 자체 시험검사에 있어서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를 요하는 경우의 소요비용은 별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계상하는데, 내부검사를 요하는 제품이라 함은 예를 들어 소방법령이나 계량법 등에 의하여 제품을 판매함에 앞서서 국가에 의한 검사 또는 검정을 받아야 하는 제품 등을 말한다. 원가계산에서 시험검사비의 직접비로서의 인정은 규정에 나타난 바대로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제조경비상의 간접비로 배부계산하는 것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시험검사비”는 당해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자체 시험검사비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 “시험검사비”는 당해제품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수량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참고】 시험검사비 원시자료 검토 방법

구 분	검 토 사 항	검 토 자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내역/증빙자료 ○ 규격서 규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검사 의뢰여부검토 ○ 검사수량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검사내역서 ○ 세금계산서 ○ 규격서

(7) 외주가공비

외주가공비는 기술적으로 자사제조가 불가능하거나 시설부족 또는 생산능력 부족 등의 경제성을 이유로 외부에 재료를 제공하여 가공만을 의뢰하였을 경우의 가공비만을 말한다. 그러므로 부분품 등 완제품은 동비목에 포함해서는 안되며 그것은 재료비에 포함 계산하여야 한다.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주 공장에 주고 가공이 완료되어 인수할 때 가공비를 지불하는 것이며, 이 밖에 사용재료의 잔품 또는 작업시설물의 처리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주의할 것으로는 외주가공비는 당해 계약품목에 직접 관련한 비용을 직접 계산하는 것이며, 제조원가명세서상 외주가공비 비목이 있다고 하여 이를 배부계산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 “외주가공비”는 제품의 자체 제조기술 또는 설비부족 등으로 인하여 재료를 제공하고 가공만을 의뢰하여 부분품으로서 인수할 때 지급되는 단순가공비를 말한다. 다만,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 “외주가공비”는 계약목적물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외부와의 가공계약에 관련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비용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업체에서 작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직접 임금을 지급하며 급여대장상 반영된 경우에는 이를 직접노무비로, 업체가 노무용역제공업체(인력회사)와 일부부문이나 공정에 대해 도급방식으로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외주가공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 외주가공비 원시자료 검토 방법

구 분	검 토 사 항	검 토 자 료
○ 발생내역/증빙자료	○ 노무비 중복여부검토	○ 제조원가명세서
○ 자체가공시설 실태	○ 과다계상여부검토	○ 제조경비원장
○ 재료지원관계	○ 가공비 적정성검토	○ 세금계산서

3) 배부계산

간접경비는 동일한 생산기간 중에 여러 가지 제품이나 시공물 또는 공정에 공통적으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느 특정제품이나 특정 시공물별로 그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소비된 경비만을 따로 구분해서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비를 말한다. 따라서 간접경비를 계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일정기간에 각 부문에 공통적으로 발생된 경비의 총액을 파악한 후,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생산형태, 공통성, 비례성 등을 충분히 검토·감안하여 그에 알맞은 배부기준과 배부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계산 시의 경비계산은 특정 제품이나 시공물별로 구분해서 산출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참고】 제조간접비 배부기준

배부기준	가액법	재료비법
		노무비법
		원가법
	시간법	직접작업시간법(노무공수법)
		기계작업시간법
	수량법	
혼합법		

- (1) 배부기준이란 부문공통비 형태로 발생한 간접경비를 특정 제품이나 또는 시공물별로 배부하는 근거기준으로써 이에 는 가액법, 시간법, 수량법 및 혼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부회계상의 원가계산 시에 실무자간에 가장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것이 가액법이다.
- (2) 가액법은 간접경비를 각 부문(제품 또는 공정)별로 배부함에 있어 당해 제품의 제조에 소비된 가액(재료비 또는 노무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경비가 재료비나 노무비와 정비례하여 발생하는 경우에 적합한 것이다. 일단 배부기준이 결정되면 비목별로 그에 알맞은 배부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배부방법에도 배부기준별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용빈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써, 가액법기준을 전제로 했을 경우의 재료비법, 노무비법 및 원가(재료비+노무비)법과 시간법기준을 전제로 했을 경우의 노무공수법(또는 작업시간법)등에 관해 간략하게 그 내용을 소개한다.

① 재료비법

원가구성요소중 당해 제품의 재료비 비중이 큰 경우에는 경비가 과다하게 배부될 수 있고, 경

비가 재료비에 직접적으로 비례하지 않거나, 재료비의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 방법에 의한 경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다음】

$$\text{당해 제품의 재료비} \times \frac{\text{일정기간의 비목별 경비 발생실적액}}{\text{동기간의 재료비 발생실적액}}$$

② 노무비법

제조원가중에서 당해 제품의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에는 경비가 과다하게 배부되지만, 경비가 노무비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만 적합하며, 경비의 소요비율이 제품별로 서로 다를 경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산식은 다음과 같다.

【다음】

$$\text{당해 제품의 노무비} \times \frac{\text{일정기간의 비목별 경비 발생실적액}}{\text{동기간의 노무비 발생실적액}}$$

③ 원가법

경비가, 제조원가중 경비를 제외한 원가(재료비+노무비)에 비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적합한 배부방법으로써, 이 경우의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

【다음】

$$\frac{\text{당해 제품의 재료비와 노무비}}{\text{노무비}} \times \frac{\text{일정기간의 비목별 경비 발생실적액}}{\text{동기간의 재료비와 노무비의 발생실적액}}$$

(3) 시간법

① 직접작업시간법(노무공수법)

경비가 노무공수 즉 당해 제품의 생산에 제공되는 작업시간에 비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적합한 배부방법이며, 그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

【다음】

$$\text{당해 제품의 노무공수} \times \frac{\text{일정기간의 비목별 경비 발생실적액}}{\text{동기간의 노무공수 발생실적액}}$$

② 기계시간법

경비가 기계시간 즉, 당해 제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 가동시간에 비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적합한 배부방법으로써, 이 경우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다음】

$$\text{당해 제품의 기계시간} \times \frac{\text{일정기간의 비목별 경비 발생실적액}}{\text{동기간의 기계시간 발생실적액}}$$

4) 공사원가계산 시 경비계산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산식】

$\text{직접경비} = \sum \text{소요(소비량)} \times \text{단위당 가격}$ $\text{기타경비} = (\text{재료비} + \text{노무비}) \times \text{기타 경비율}$

(1) 산정방법

① 계상기준

가. 품셈 및 법령에 의하여 산출이 가능한 비목은 직접산출(직접경비)

나. 그 외의 비목은 업체의 원가계산자료(공사원가명세서등)를 분석 후 비율 산정하여 계상(기타경비)

$$\text{당해 제품의 노무비} \times \frac{\text{일정기간의 비목별 경비 발생실적액}}{\text{동기간의 노무비 발생실적액}}$$

② 비율산정

가.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업체 이상의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

나. 다수기업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대한건설협회발간 “완성공사 원가분석”등)를 활용

③ 경비 세비목

가. 직접경비

- o 기계경비
- o 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 o 전력비
- o 폐기물처리비

- 안전점검비
- 운반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가설비
- 품질관리비
- 환경관리비 등

나. 기타경비(원가계산자료를 분석하여 산정한 비율적용)

- 수도광열비
- 소모품비
- 세금과 공과
- 지급수수료
- 복리후생비(노무관리+복리후생)
- 여비, 교통, 통신비
- 도서인쇄비
- 사무용품비등
- ※ 수의계약 공사는 별도요율 적용

(2) 비목별 경비의 계산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 관련규정

- 예정가격작성기준 19조의 3항 10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 노동부 고시 제2015-101호

$\text{산재재해보상보험료} = \text{노무비} \times \text{산재재해보상보험요율}(\%)$
--